

**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<제192회 임시회>

2010. 10. 20

**달 성 군 의 회
전문위원 백 진 흠**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첨 토 보 고

I. 개 요

1. 제 출 일 : 2010년 10월 4일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(과학경제진흥실장)
3. 폐지이유

○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냉천전원음식점지구 분양완료 등 경영사업이 완료되고 지방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 - 경영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계정으로 전출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

II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
1. 폐지조례안의 취지

-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던 사업이 완료되고 지방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.

2. 폐지조례안 타당성 검토

- 본 조례는 경영사업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군에서 선정 추진하는 경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명분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관 계 법령

〈지방자치법〉

제126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〈지방재정법〉

제5조(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